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5. . . (제 회)	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상직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5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심사관 중 일부를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처리 관련 직위에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의 번역 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의 효율성을 높 이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5. 2. 17. ~ 3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,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
5. 그 밖에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심사관의 자격)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5조(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)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심사관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,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) ① ----- ----- -----.</p>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
번역 업무

5. 그 밖에 특허청장이 디자인
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업무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8353